

총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회는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고 칭한다.
- 제 2 조 (목적)** 본회는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학생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학문탐구와 건전한 대학문화를 창달하며, 대학의 자율적 발전에 부응하는 실천과정 속에서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설치)** 본회는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안에 둔다.
-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의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단, 계약학과 및 시간제 등록생은 제외하며 휴학 중에 있는 학생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③본회의 회원은 사업 계획, 회비와 재정, 그 밖의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
④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율과 본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 6 조 (지도)** 본회는 학생자치활동에 관련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 제 7 조 (기구)**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대의원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총부학생회장과 집행부, 단과대학 학생회의 기구를 둔다.

제 2 장 학생총회

- 제 8 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9 조 (의장)** ①학생총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 유고시에는 부학생회장, 집행부의 장의 순서로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총학생회 정·부회장에 대한 탄핵 결정시에는 대의원회 의장이 학생총회 의장이 된다.
- 제 10 조 (권한)** ①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받는다.
②학생총회는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및 결정한다.
- 제 11 조 (소집)**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 학기초에 총학생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개최 6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원)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본회 회원 1/10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 12 조 (의결)** 학생총회는 회원 1/3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회원은 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대의원회

제 13 조 (지위) 대의원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단, 학생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있을 시에 그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한다.

제 14 조 (구성) ①대의원회는 본 회의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은 우리 대학교 각 학부(과/전공), 학년별 재학생들의 추천으로 선출된 대표로 한다. 단, 대의원은 학부(과/전공)대표를 겸임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와 집행부 임원 및 학부(과/전공) 학생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③대의원수는 학부(과/전공), 학년별로 1인씩 선출한다.

제 15 조 (의장)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6 조 (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권
2. 학생총회의 소집요구권
3.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권
4. 총학생회장의 탄핵권
5.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요구권
6.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심의 및 승인권
7. 감사결과 부정 발견 시 그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학교당국에의 징계요구권
8. 예산·결산안의 심의 및 승인권
9. 집행부 승인권
10.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 17 조 (소집)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9월, 11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요구 또는 상임위원회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 (의결) ①대의원회 의결은 제16조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6조 제1호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4호는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 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4 장 상임위원회

제 20 조 (구성) 대의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둔다.

- ①상임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이 된다.
- ②상임위원은 각 대학 대의원이 호선한 대표 대의원으로 한다.
- ③상임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1 조 (업무 및 권한) ①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부과한 안건에 관한 사항
2. 학생총회의 소집요구권
3. 대의원회의 소집요구권
4. 회칙개정의 발의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사무심사
7.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요구권
8. 기타 회칙에 명시된 사항

②상임위원회 운영경비 및 집행내역은 학기별로 대의원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한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대의원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재적상임위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의결로서 대의원총회에 갈음할 수 있다. 단,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 (의결) 상임위원회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총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 23 조 (지위) ①총학생회장은 본 회의 학생총회 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집행부의 장이 된다.

②부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을 계승한다. 단, 회장의 궐위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기간 동안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 24 조 (자격) 총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대학교에서 4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단, 재선거시에는 5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2. 전체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인 자
3.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4.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집행부는 그 직을 사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자

제 25 조 (임기)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학생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될 경우 임기종료일에서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 26 조 (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집행부 임원의 임면에 대한, 대의원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총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의 회의 소집 및 주관
3. 본 회 회원의 중의를 대표하고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행정에 대하여 학교당국에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
4. 본 회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결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제출하는 사항
5.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의 집행
6.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27 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심의기구이다.

제 28 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본 회 집행부 부장 2인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가 필요로한 경우에 해당 동아리나 학부(과/전공) 학생회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예산편성시에 한하여 대의원회 의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9 조 (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비의 책정 및 대의원회 상정
2. 학생총회의 소집요구권
3. 대의원회의 소집요구권
4.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의 제반사업과 예산·결산보고서의 검토, 조정, 심의 및 대의원회 제출
5. 집행부의 업무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조정, 심의
6. 회칙 개정안의 발의와 대의원회 상정
7.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의 의결

제 30 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매월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회의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 31 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집행부

제 32 조 (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33 조 (업무 및 권한, 조직)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집행
2. 총학생회에 관한 일체의 사업계획보고서와 결산보고서의 운영위원회 제출
3. 집행부는 7개 이하의 부로 조직하고 각 부는 부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며 명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재 정

제 34 조 (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본 회의 회비는 본 회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35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말일까지로 하며, 예

산집행은 2기로 나누어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 36 조 (예산) ①총학생회장은 다음 학기의 총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예산은 본 회를 구성하는 각 기구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항목별로 편성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동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대의원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의원총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의원총회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 확정하고 확정후 3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총학생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⑥예산 확정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수입이나 지출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동 추경예산안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총학생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학교당국에 위임하고 그 인출 및 집행은 학교의 일반회계 지출절차에 준하여 총학생회장이 인출 집행한다

제 37 조 (가예산) 본 회의 예산이 소정 기일내에 확정되지 못하여 본 회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총학생회장은 대의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본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다.

제 38 조 (결산보고) ①총학생회장은 매 학기말을 기준으로 집행부 및 단과대학 학생회가 작성한 해당결산 보고서를 수합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학생회장은 대의원회의 승인 후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 (감사) 본 회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9 장 단과대학 학생회

제 40 조 (지위 및 구성) 단과대학 학생회(이하 "단대 학생회"라 한다)는 본 회 하부 구조로서, 당해 대학의 최고학생자치기구이다. 단, 당해대학 소속 학부(과/전공)이 2개 이상이어야 단대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41 조 (회원) 본 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당해 대학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 42 조 (회장 및 부회장) ①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단, 재선거 시에는 5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2. 전체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인 자

3.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4.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집행부는 그 직을 사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자

②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총부학생회장의 경우에 준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단대 학생회장은 당해 대학 학생회를 대표하며, 본 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④단대 학생회장은 단대 학생회 사업계획 및 예·결산보고서를 본 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43 조 (집행부) 단대 학생회 집행부는 본 회 집행부에 준하여 4인의 부장을 둔다.

제 44 조 (운영위원회) 단대 운영위원회는 해당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 집행부 그리고 학부

(과/전공)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45 조 (상임위원회) 단대 상임위원회는 해당 단대별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상임위원 중에서 해당 단대 대의원이 선출한 의장을 둔다.

제 46 조 (업무 및 권한) 단대 학생회는 당해 대학의 각 학부(과/전공)를 기반으로 본 회 제반기구의 업무에 준하여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제 47 조 (예산) 단대 학생회 예산 배정은 각 대학별 회원 수에 비례하여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심의한다.

제 48 조 (단대 학생회칙) 단대 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회 회칙에 준하여 각 단대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9조 (임기) 단대 학생회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학생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될 경우 임기종료일에서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 10 장 선 거

제 50조 (선거시기) 총·부학생회장, 대의원 및 대의원회 의장·부의장, 상임위원 그리고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의 11월중에 실시한다. 단, 재선거는 당해연도 3월중에 실시한다.

제 51 조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본 회의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총·부학생회장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 상임위원회가 된다.

2. 각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대 학생회 집행부가 되며, 대의원회 상임위원회가 선거전반을 관리·감독한다.

3. 위 제 1 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2 호는 단대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한다.

제 52 조 (총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입후보자는 2인 1조가 되어 선거의 전 과정에 1개조로서 참여하고, 본 회 전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후보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53 조 (단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 제51조에 준하며, 해당 대학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 54 조 (선거방법) ①제52조, 53조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하되, 당해 회원 2/5 이상 참가 시 유효하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라인 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55 조 (보궐선거) 총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잔임기간이 150일 이상 일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56 조 (대의원 선거) 대의원은 각 학부(과/전공)의 학년별 재학생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제 57 조 (대의원의장 및 부의장 선거) ①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피선거권은 4학기 이상 수료한 대의원에게만 있다.

②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에 있어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58 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1 장 회칙개정

제 59 조 (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 재적 1/5이상의 발의
2.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의 발의
3. 본 회 회원100인 이상의 발의
4.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의 발의

제 60 조 (의결) 본 회칙 개정 발의시 대의원회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30일 이내에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장 학생지도위원회

제 61조 (구성) ①본 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본 회 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은 학생지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62 조 (기능)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학생회활동에 따른 제반 사항을 지도감독 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학생자치활동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단, 위1, 2, 3, 4호의경우사전에심의지도를받아야한다.
8. 단대학생회 학생지도위원회는 해당 대학 학생회활동에 따른 제반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제 13 장 보 칙

제 63 조 회칙에 나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각각의 시행세칙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회칙은 2006 년 03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4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6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6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8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9년 10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20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20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21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22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